예 산 총 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68,912,026	35,067,361
일반회계	1,105,181,350	33,155,441
특별회계	63,730,676	1,911,920
공기업특별회계	58,824,863	1,764,74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444,915	1,033,34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379,948	731,398
기타특별회계	4,905,813	147,174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647,977	79,439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985,922	59,57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71,914	8,15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3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3년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36,51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